

1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지시 제725호

1951년 잠건 및 양모수매에 관하여

내각 수매국장은 잠건 및 양모를 다음과 같은 교역비율로 수매할 것이다.

1. 잠건교역에 있어서는 추건 및 종자건의 국정가격과 조포의 기업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역할 것.(국정가격은 1950년 국정가격을 적용한다.)
2. 양모교역에 있어서는 양모의 국정가격(보상물자와 교역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격)과 조포 국영기업소 생산자 판매가격에 1951년 상업부대비를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역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일성
1951년 6월 21일
평양시

1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지시 제727호

강원도 지방의 전채소개민 이주대책에 관하여

전채로 인하여 강원도 지방에서 이동하는 소개민들은 이를 황해도 및 함남도에서 인수 수용하되 그들의 생활상 안정을 보장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전채소개민들을 인도 인수하는 해당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소개중의 그들의 도중숙식을 조직 보장할 것.
2. 황해도 및 함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수한 소개민들중 일반로력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직업을 알선할 것이며, 농민들에 대하여는 농촌에 적절히 배치하여 로력이 부족한 농가의 영농사업을 협조케 하는 등으로서 그들의 생활

상 안정을 보장할 것이며, 기타 비로력자들에 대하여도 주택 기타 생활조건들을 지체없이 해결하여 줄 것.

3. 내각 량정국장 및 해당도 인민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들 전채소개민의 도중식사 및 비로력자에 대한 식량을 1일 1인당 300그램씩 배급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수상 박헌영
1951년 6월 24일
평양시

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비준 제321호

내무성 규칙 제9호

자동차 단속에 관한 규정 부록양식 일부개정에 관하여

내무성 규칙 제9호 자동차 단속에 관한 규정 부록양식중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내무상대리 부상 리필규
1951년 6월 13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일성
1951년 9월 1일
평양시

1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지시 제772호

파란 및 헝그리아에 전재고아를 파견할데 관하여

우방인 파란 및 헝그리아 인민들의 호의적 요청에 의하여 전재고아 400명 (량국에 각각 200명씩)을 파견하게 되었는데 교육상은 이 사업을 조직 집행할 것이며 이를 협조 보장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상업상은 전재고아 400명 교원 10명 및 인솔자 2명에게 소요되는 별지 명세표(생략)에 의한 물품을 1951년 9월 5일까지 교육성에 배급할 것.
2. 재정상은 전재고아 400명 교원 10명 및 인솔자 2명 파송에 관한 별지(생략) 예산서에 의한 비용을 1951년 8월 말일까지 지출할 것.
3. 교통상은 전재고아 400명 교원 10명 및 인솔자 2명을 파송함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그의 수송사업을 보장하여 줄 것.
4. 내각 간부국장 및 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상이 배정한 바에 의하여 교원 인솔자 및 전재고아를 선발하여 파송사업을 보장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일성
1951년 8월 26일
평양시

1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지시 제773호

함남도에 애육원을 증설할데 관하여

미제 무력침공자들의 일시적 강점시기의 만행과 야만적 폭격으로 인하여 증가된 강원도내 전재고아중 1,000명을 함남도에 이송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애육원을 함남도 내에 증설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제반대책을 강구할 것을 관계각상 직속국장 및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전재고아중 1,000명을 함남도에 이송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할 것.
2. 함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강원도로부터 이송된 전재고아 1,000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1951년도 수용계획중 미달성분 400명을 기설 애육원에 수용함과 동시에 남아지 600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 () () () () 각각 1개 소식 애육원을 신설할 것.
3. 재정상은 애육원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도록 조치할 것.
4. 내각 량정국장은 애육원 증설에 필요한 식량을 배급하도록 조치할 것.
5. 교육상은 이상 모든 사업의 진행정형을 1951년 9월 말일까지 내각에 보고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 상 김일성
1951년 8월 27일
평양시